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80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한정애 · 박용갑 · 문진석
임오경 · 윤후덕 · 서영석
이개호 · 박지원 · 허영
조인철 · 진성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은 부재함.

이에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

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01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전력거래를”을 “전력,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거래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설비용량의 변경(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도 포함한다)
4.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 구역

2. 공급전압

3. 설비용량의 변경(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도 포함한다)

4.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 7. (현행과 같음)